

2025년도 2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5. 8.

감사위원회

1. 개 요

☐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8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 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☐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5. 4. 1. ~ 6. 30.(2025년 2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온·오프라인
 - 온라인(응답소 부패 · 공익신고), 오프라인(우편 · 방문 등)

☐ 접수 결과

- 2025년 2분기 총 92건 접수

[표 1] 2025년 2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4월	5월	6월
공 익 제 보	공 익 신 고 36	17	9	10
지 원 센 터	부 패 신 고 56	25	19	12
합	계 92			

※ 제보자가 접수시 선택한 접수창구

2. 제보 재분류 및 분배

□ 제보의 재분류

- 접수된 92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해당 민원 77건

[표 2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 계	공익제보 해당 77건(83.7%)		일 반*
	부패신고	공익신고	
92 (100%)	40 (43.5%)	37 (40.2%)	15 (16.3%)

*일 반 : 공익제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내용상 관련 기관 감사부서의 검토가 필요하여 이첩한 민원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의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, 공공기관 재산 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자보호법 [별표]의 신고대상 법률 위반행위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직무수행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

□ 제보 분배

[표 3] 제보 소관기관별 분배

(단위 : 건)

분배기관	유형	건 수	주요내용
본 청	부 패	10	○ 공무원 모델활동, 미용시술 등 겸직 ○ 시 관련 민간 근로자 근무시간 과다산정, 허위근태 등 ○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인점 대상 교부서류 누락 등 가맹사업법 위반
	공 익	4	
	일 반	6	
	소 계	20	
본 부 / 사 업 소	부 패	3	○ 공무원의 외주업체 편의제공 등 영리업무
	공 익	-	
	일 반	-	
	소 계	3	
투 자 출 연 기 관	부 패	8	○ 투출기관 직원 복무위반, 사업비 전용 등
	공 익	-	
	일 반	-	
	소 계	8	
자 치 구	부 패	17	○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감독요청 ○ 식품접객업소 불법호객행위 ○ 불법 주정차 단속 ○ 자원 재활용업체 소음공해, 쓰레기 무단적치 등
	공 익	33	
	일 반	2	
	소 계	52	
타 기 관	부 패	2	○ 교육청 직원 복무위반(취하) ○ 광우병 사태(취하)
	공 익	-	
	일 반	7	
	소 계	9	
총	계	92	

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조례의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[참고사항]

- 타기관 소관 제보의 경우 국민신문고 이관처리하거나 타기관 신고 안내 후 종결
- 공익제보센터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보의 분배자로서 접수된 제보를 관련 기관(자치구 포함)에 이첩하거나 제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을 일반민원 변경 등 처리

3. 제보 처리결과 (2025. 6. 30.기준)

[표 4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 계	처리완료(30)		종결(36)			진행중
	처 분 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민원안내 (보완요구, 제보요건 안내 등)	취 하	
92	6	24	10	7	19	26

※ 처 분 : 신분상 조치, 행정처분 등 정식 조치

※ 개 선 : 업무개선,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행정지도 등

※ 종 결 : 조사결과 사실아님(해당없음) 등으로 종결

· 민원안내 : 증거 미첨부·피신고자 불특정 보완요구 등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6항